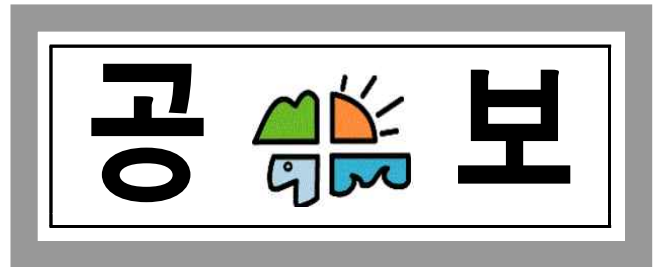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97호 2023년 11월 03일(금)

조례

-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3
-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7

고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정정고시 11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57호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기간 중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코로나19 비상 대응 근무 등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해당 재직기간에 해당되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수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잔여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58호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

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3. 화장비용

4.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

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장례지원 금품을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품을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장례 수행자	성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 용 기 관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수료
	2. 사업자등록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없 음
	3.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59호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속초시의회

다. 속초시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라.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1회용품 줄이기와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속초시 보조금을 통해 주최·주관되는 행사 및 회의
3. 속초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

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속초시 누리집 및 소식지 등에 게재 및 홍보할 수 있다.

제8조(다회용품 지원) 시장은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2.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3. 제8조의 우수업소로 지정된 경우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고시 제2023-1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정정고시

속초시 고시 제2023-122호(2023. 8. 29.)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된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기재사항 표기 오류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 결정 사항을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속 초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속초시 대포동 753-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사업주체 및 대표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서남중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 위치: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753-3 외 15필지
 - 면적: 34,027m²
4.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7,124.2554m²
 - 연면적 : 38,657.1016m²
 - 주건축물수 : 12동
 - 지하층수/지상층수 : 지하 2층/지상 4층
 - 총세대수 : 134세대
 - 사업비 : 216,600,000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23. 10. 31. ~ 2025. 12. 31.(예정)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협의조서(붙임)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033-639-1543) 및 미래전략과(☎033-639-244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합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협의조서 1부.

<붙임>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1.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3	대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대포동 753-3번지 일원	-	증) 34,783	34,783	-

1.1.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53	속초시 대포동 753-3번지 일원	34,783	도시 기능·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1. 용도지역 결정 조서

2.1.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정정)

(당초)

구 분	구역내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4,783	-	34,783	100	-
자연녹지지역	15,398	-	15,398	44.3	-
제1종일반주거지역	19,385	-	19,385	55.7	-

(변경)

구 분	구역내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4,783	-	34,783	100	-
자연녹지지역	19,385	-	19,385	55.7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398	-	15,398	44.3	-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3.1. 도로

3.2.1. 도로총괄표

■ 기정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 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	48	756	-	-	-	-	-	-	1	48	756
중로	1	48	756	-	-	-	-	-	-	1	48	756

3.2.2.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67	10 ~ 13.5	국지 도로	48	대포동 304-2	대포동 454-6	일반 도로	-	-	

3.2.3.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67	- 노선 신설 - 폭원 : 10 ~ 13.5m - 연장 : 48m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4.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4.1.1. 가구 및 획지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²)	
신설	A	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753-3번지 일원	34,027	공동주택 (연립주택)
합 계				34,027	

4.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4.2.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결정내용
A-1	대포동 753-3번 지 일원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용적률	◦ 전체 용적률 60% 이하
		높 이	◦ 지하2층, 지상4층 이하(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형 태	◦ 도면참조
		색 채	◦ 도면참조
		건축선	-

5.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

5.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대포동 753-3번지 일원	단지내 조정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 교통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는 차량 진·출입구 설치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